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7호 2008. 9. 3 (수)

# 【고 시】

# 【공 고】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 정선군고시 제2008-82호

#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9. .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상호 및 명칭	남면장			
·사용) 자	대 표 자		주 소	정선	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하 천 명		지장천(지방2급하천)			
	위 치	정선군 남면 광덕:	리 461-	-5번 <i>져</i>	]선(1182천)
공사 (점용· 사용)	면 적	영구점용 A=41. (임시점용 A=508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개요	기 간	2008년 08월 28일 ~ 영구 (공사기간 2008.08.28 ~ 2008.10.31)			
	목 적 및 사 유	천년 돌다리 조성사업			

※ 설계도서 "별도보관"

#### 정선군공고 제2008-470호

##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정제안 모집 공고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를 위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자율 사업계획(안)을 공모 및 심사·채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군민 지정제안 모집을 공고합니다.

 2008.
 8.
 11.

 정 선 군 수

1. 제안기관 : 정 선 군

2. 제안의 모집

가. 모집기간 : 2008. 08. 11일 ~ 2008. 09. 10일(30일간) 나. 접 수 처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560-2371, 2376)

3. 제안의 자격과 방법

가. 제안의 자격 : 정선군민

나. 제안의 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4. 제안의 종류 : 지정제안

5. 지정제안 모집내용

가. 사업명 :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나. 사업비(예정): 1,000백만원

다. 제안에 포함할 내용

- o 정선군 일원의 부존자원을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으로 개발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① 생약초·옥수수를 활용한 토속주와 결합된 웰빙음식 개발 등 지역성과 차별 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방안
  - ② 기존 특산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와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 한 신소재 상품개발 등
  - ③ 기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 및 기본방향에 적합한 사업
- 6. 제출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 o 제안서 1부
  - o 제안내용 설명서 1부
    - 제안관련 서식은 정선군 홈페이지(www.jeongseon.go.kr)에서 다운로드
- 7. 창안자에 대한 시상
  - o 우수상(1명) : 시상금 30만원

o 장려상(2명) : 시상금 10만원

## 8. 창안의 권리승계

o 채택된 제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및 등록권리와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정 선군이 승계함

## 9. 기 타

o 제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문의

#### 정선군공고 제2008-474호

# 세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교통영항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8.8.19.정 선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주)함백종합레져타운

라. 사 업 면 적: 609,311 m²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08년 8월 19일 ~ 2008년 9월 12일(25일간)[평일 09:30~17:30] 나. 공람장소: 정선군청 산업경제과(☎033-560-2438), 건설도시과(☎033-560-2367), 합백출장소(☎ 033-560-2690)

####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08년 8월 26일(화) 14:00

나. 장 소: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6-1 함백출장소 회의실

다. 내 용: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 설명

라. 참석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9. 19일(금)까지(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나. 제 출 처 : 공람장소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및 함백출장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 기재 제출

라. 제출내용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

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등)

####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033-560-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공고 제2008-485호

####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이상 2008.08.25. ~ 2008.09.09.(16일간)

2. 공고제목: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명령 대상농지 및 당해농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당해농지 면적 및부과예정금액
박영혜	541030-****	정선군 임계면 860번지	송계1리	- 강원 정선군 임계 송계1리 941-13번지 718㎡ - 강원 정선군 임계 송계1리 941-15번지 1,720㎡ 금 2,625,730원

#### 4. 의견제출

가. 기 간: 2008. 08. 25 - 2008. 09. 09까지

나. 장 소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5. 기타사항

- 농지법 제6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당해농지 소유권이전 시 까지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 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033-560-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5. 정 선 군 수

#### 정선군공고 제2008-493호

## 2008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의거 「2008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6.

정 선 군 수

1. 주 관 : 정선군

2. 추천기간 : 2008.8.26~9.19(25일간)

3. 시상부문 및 추천기준

부문	추 천 기 준	추 천 자
문화 체육	문화, 예술, 교육, 군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원장,학술및문화 예술 단체정,각급학교 장,체육단체장,읍면장
지역 개발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각 사회단체장,읍면장
농림 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산업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로 지역 주민의 농림업소득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가 기업체대표, 농협 축 협·산림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읍면장
사회 봉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 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각 사회단체장, 주민 생활지원과장,읍면장
환경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환경관련단체장,환경 산림과장,읍면장

○ 공통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기준일 현재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 4. 추천 제외대상

- O 당해연도 향토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 O 향토민상을 동일 부문으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5. 추천 구비서류
  - O 수상후보자 추천서(읍면사무소 비치)
  - O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 O 이력서 1통(단,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함)
-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O 기타 공적 증빙자료

#### 6. 수상자 결정

O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7. 시 상

○ 제33회 정선아리랑제 및 제26회 군민 의 날(10.16)에 시상

#### 8.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42),또는 읍·면 총무부서

## 정선군공고 제2008-494호

# 소하천 점용(기간연장)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 (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08.29.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상호 및	빚 명칭	(주)공영건기산업				
사용) 자	대 포	표 자	최 일 순	주 소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5-3번지		
소 하 천 명		명	척 산 천				
	위	치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1구(421-5번지선)				
공사 (점용· 사용)	면	적	$A = 408  \text{m}^2$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개요	기	간	2008년 08	월 28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사	적 ! 유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점용			

#### 정선군공고 제2008-495호

####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고시서(독촉장)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대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합니다.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및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2. 위반내용: 정기검사지연
-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4호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 "붙임"참조
- 5.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8. 28 ~ 2008. 9. 11(15일간)
- 6. 공고내용(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전화 033-560-2454, FAX 033-560-2039)

 2008.
 8.
 28

 정 선 군 수

# 반송내역

연번	소유자	주 소	차량번호	정기검사 위반일자	반송사유
1	윤흥상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6-6	93011499	07.08.11	이사감
2	㈜태정건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3	강원28노3486	07.05.22	이사감
3	이성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3 정선군임대@ 나-202	77더4010	08.01.15	이사감

#### 정선군공고 제2008-49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무단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시송달 내역 ◇

□ 제 목:자동	차 정기검사	· 사전(경과)안내	엽서 공시송달
----------	--------	------------	---------

- □ 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경과) 안내
-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
-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붙임참조"
- □ 공시송달 기간 : 2008. 8. 28 ~ 2008. 9. 11(15일간)
- □ 상기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 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54)

2008.8. 28.정 선 군 수

# 검사기간(경과)안내 반송내역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일	주 소	소유자	반송사유
1	강원34가3262	08.06.0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못골@ 1-206	김혜숙	반송함 투여
2	60저9424	08.08.1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 104-704	서세광	반송함 투여
3	강원27노8111	08.05.30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 102-906	이계선	반송함 투여
4	02주1912	08.08.18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 206-502	신동수	반송함 투여
5	53주 1521	08.07.0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53-6	윤인숙	수취인 불명
6	03소4901	08.06.19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887	장진희	수취인 불명
7	06우8598	08.09.08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1	김영태	수취인 불명
8	강원70노1954	08.08.12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1	김종영	수취인 불명
9	강원70노2959	08.08.1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1	이왕균	수취인 불명
10	강원27고5746	08.08.18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81	정영자	수취인 불명
11	강원80노5033	08.06.20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30	김점기	수취인 미거 주
12	93더2888	08.06.06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	이황용	수취인 미거
13	77다6135	08.07.08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11	서양자	이사감
14	02다9152	08.09.09	정선군 북면 여량리 141-13	김남호	이사감
15	51모1985	08.08.22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90-2	㈜늘푸른	이사감
16	강원80노5479	08.05.2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95	㈜진영건 설	이사감
17	77도 1934	08.08.19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47	엄광일	이사감
18	51모3689	08.06.07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0-1	최국환	이사감
19	05서8359	08.09.0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70	이만석	이사감
20	93日2049	08.09.0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70	이만석	이사감
21	강원28노1984	08.08.2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15	홍미경	이사감
22	93러3692	08.08.23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 197	윤지영	이사감
23	51모3980	08.08.2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27	송태호	수취인 불명
24	강원27노7345	08.06.23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97-2	이금자	수취인 불명

#### 정선군공고 제2008-497호

####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장기미수령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8. 28 - 2008. 9. 1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내역 참조"

4.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5. 근거법규 : ㅇ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문 의 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 ☎ 033) 560-2454

2008.8. 28.정 선 군 수

#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검사일	주 소	성명	사유		
1	77다7454	07.09.2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18	안대현	이사감		
2	06년6407	07.10.26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2	김영순	이사감		
3	41다5080	07.10.0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 5-203	김양호	이사감		
4	93012090	08.04.18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58	유돈명	이사감		
5	08도9157	08.04.29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79	김활보	이사감		
6	강원27다7893	08.01.3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5-1	탁광훈	이사감		
7	강원80노5605	08.04.16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50-9	이 훈	이사감		
8	72주2028	07.12.0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 204-505	조상환	이사감		
9	93012447	08.04.08	정선군 북면 구절리 244-5	정영민	이사감		
10	56로3229	08.04.12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7-2	정해길	이사감		
11	강원8라2167	08.03.0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붕@ 13-104	윤성욱	이사감		
12	77014224	07.11.08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0	권기현	수취인 미거주		
13	강원27라5885	07.09.28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선명오피스텔	김성선	수취인 미거주		
14	02다9430	08.03.06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다성 건설	수취인 불명		
15	50모7153	07.10.28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함백주공@ 3-104	권혁기	반송함 투여		
16	93012034	07.09.1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 104-1104	김기수	반송함 투여		
17	강원28노43910	07.09.2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34 고한연립주택 202호	박동수	반송함 투여		
18	93보4841	08.02.25	정선군 동면 백전리 182-1	김세하	반송함 투여		
19	강원27노6519	08.04.0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 101-1201	하순섭	반송함 투여		

#### 정선군공고 제2008-500호

#### 정선군 금고지정 제안공고

정선군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자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9. 1.정 선 군 수

- □ 지 정 방 법 : 일반공개경쟁방식
  - ☞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제안(신청)서를 서면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심사된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함
- □ 금 고 지 정 : 단수금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 약 정 기 간 : 2009.1.1 ~ 2012.12.31(4년)
- □ 신 청 자 격
  - ☞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인가를 받고 정선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 공개경쟁 참여절차

○ 관계서류 열람 및 제안설명서 교부

- 교 부 일 : ~ 2008.9.3

- 문 의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033-560-2282)

○ 제안(신청)서 접수

- 일 시 : 2008.9.16(화) 09:00 ~ 18:00

- 장 소: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제출부수 : 10부 (요약서 포함 원본1부, 사본9부)

- 제출서류 : 정선군금고 지정신청서 및 제안서 등

#### □ 심사 및 평가방법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정선군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항목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
- 정선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 병행

#### □기타사항

- 제안서는 정선군 금고지정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만, 정선군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요청시 가능함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소 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7 0 -1 -1 0	- 국외 평가기관 (6점)		
1. 금융기관의	- 국내 평가기관 (4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는 세기기소의 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7점)		
200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5점)		
	소 계	15	
2. 군에 대한 예금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및 대출금리 수준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 t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소 계	20	
0 -1617-1 110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ol> <li>지역주민 이용</li> <li>편의성</li> </ol>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원귀경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라.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5	
	소 계	20	
4 7 7 6 1 1 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ol> <li>금고업무 관리능력</li> </ol>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인너ㅇㅋ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5	
	라.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능력	5	
5. 지역사회 기여	소 계	10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	
추진능력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